

의안번호	2200342
의 퇴 인	이해식의원
회 답 일	2024.6.26.
추계번호	24D0673

지방의회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조(사적 이해관계의 등록)부터 제41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까지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재직정보,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부동산 및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을 신고하여야 함(안 제3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37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8조)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전심사,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39조)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전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전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40조) -의원이 제37조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간주함(안 제41조)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7조(사적 이해관계의 등록)부터 제41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특례)까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지방의회의원에게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적용(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 지방의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공직자¹⁾이므로,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용을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²⁾하고,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이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³⁾하여야 하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 제도의 적용을 받음

-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⑤ (생략)
- 3)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 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당선인으로 결정된 30일 이내에 본인과 가족의 주식·부동산 등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심사·국정감사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⁴⁾와 같이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이해충돌의 신고 등을 하는 경우 등록·신고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시스템 구축비용,⁵⁾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업무 증가에 따라 운영비용 증가⁶⁾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의회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수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지방의회의 규모, 다른 지방의회 시스템과의 연계 여부⁷⁾ 등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시스템 구축비용이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④ (생략)

4) 「국회법」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5) 국회의 경우, 2021년 「국회법」의 개정으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7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국회 이해충돌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음

6) 윤리심사위원회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7)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주민감사청구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공통으로 구축하는 사례가 많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